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13호

글렌데일 시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함

발급일: 2020년 7월 30일

소매업소의 실외영업을 위한 수용인원 임시증서의 허가증 신청비 면제와

허가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지방자치법의 2.84조에 의거하여 글렌데일 시의회는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코로나19)에 대해 늘어나는 우려로 인해 불가피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결의안 20-28호를 채택하였다. 바이러스 증상은 열, 기침, 호흡곤란이고,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하는 여러가지 결말이 있게 된다. 짧은 기간에 확진자 수가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가 사람 간에 쉽게 퍼진다고 알렸으며 대중은 가능할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방침과 일과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급하였다. 또한, 2020년 3월16일, 시의회는 특정 공공장소의 출입을 막고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글렌데일 시는 손 위생과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노력을 배로 강화하였다. 시정부인 우리가 커뮤니티 확산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비상서비스국장의 비상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글렌데일 시 전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근접한 거리에 머물러 있는 특정 시설에 대한 일련의 일시적 규제를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공중보건국은 전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9일, 채택대피령을 발령하였고, 추후에 여러번 수정되었으며 2020년 7월 18일에 가장 최근 수정안으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직장과 커뮤니티의 재개를 촉구하였다.("카운티 명령")

2020년 5월 15일, 글렌데일 결의안 20-29호는 만기되었고 업소와 영업활동은 카운티 명령으로 계속 규제받게 된다.

2020년 5월 26일경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관은 카운티 명령을 수정하였고 재개하는 카운티 규정에 부합하면 식당 내 식사서비스를 위한 식당과 가게

내부의 쇼핑서비스를 위한 소매점 등 특정업소의 부분적인 재개를 허가하도록 추가로 여러가지 수정을 하였다.

2020년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재택대피령의 수정안과 일치하여 글렌데일 결의안 20-29호는 만료되었고, 글렌데일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글렌데일의 특정 업소는 다시 열고 근무하러 돌아가기 시작한다.

2020년 7월 1일, 개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근 늘어난 19개 카운티의 식당과 실내 업소에 대해 두번째로 폐쇄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장은 동일한 명령을 내렸다.

커뮤니티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고, 그들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보건관은 카운티에서 사회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

공중보건명령으로 시에서 연회장의 운영 등 특정한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았다. 글렌데일 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시에서 지역업소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며, 권고안 중에서 특정업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근무지로 돌아가기 규정에 상세히 나온 필수 보건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준수하면서, 실외영업을 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정업소의 실외영업허가로 공중보건명령과 규정을 지키면서 경제회복 목표를 진전한다.

비상사태서비스 국장은 공공이익과 공중보건 및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판정하면, 모든 해당 공중보건명령과 규칙을 따라서 허가서 신청비용을 면제하고 실외를 포함하여 판매소와 영업소를 확장한다.

따라서, 글렌데일 시정부법 2.84장에 의거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서비스 국장은 즉시 유효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령하였다.

1항. 글렌데일 시법령(GMC) 5.96장의 요건과 일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업소운영방식을 바꾸는 글렌데일 시에서 운영하는 소매업소는 개인건물에 보도나 실외장소에서 소매 판매를 허가하는 운영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보도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도 식사 허가증과 보도식사 허가증 부록이 필요하고, 사유건물에서 실외판매를 하려면 임시 수용인원 허가증이 필요하다.

-임시 인원수용증에 의한 임시사용을 위한 허가증 신청비는 면제된다.

타이틀 30이나 글렌데일 시법령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명령이 대기중인 시기에, 본문에서 설명된 상업용 영업활동은 실외에서 할 것을 허가한다.


-공공명령의 목적상, 사유건물에서 실외장소란 주차장의 50% 이하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포함한다. 주차장을 공유하여 50% 주차장 최소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업소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이웃들의 성공적인 청원절차 하에 줄어드는 주차장에 자격이 생긴다.

2항. 이 공공명령은 담배나 술을 구매하기 위해 최소연령을 요구하는 물건의 소매업소나 보도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3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관, 글렌데일 시의 공중보건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모임, 실내 식사, 사회적 거리두기, 얼굴 가리개에 관한 것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이 공공명령을 해석하지 않고 해석하면 안된다.

4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2020년 7월 30일
시간: 6:00 pm

서명인: 
루빅 콜라니안
비상사태서비스국장 대행

양식에 대해 승인함
마이클 J 가시아, 시검사

서명인: 
직분: 시검사
날짜: 7/30/2020